

붙임 1

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3. 11.

농림축산식품부
(축산정책과)

1. 의결주문

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(법률 제19492호, '23.6.21. 공포, '24.6.21. 시행)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 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, 장관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전자마권 발매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를 하기 위한 의무 규정 조항이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함(안 제8조 개정)
- 나.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수립·변경(마사회법 제6조의2제2항), 전자마권 발매 중단조치 후 발매 재개(마사회법 제 6조의3제3항)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(안 별표3제4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다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00.00. ~ 0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6조의10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4호 위반행위란 제4호 중 “법 제40조·제41조”를 “법 제6조의2제2항·제6조의3제3항·제40조·제4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8조(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) <u>법 제6조의3제1항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”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[별표3] 과태료의 부과기준</p>	<p>제8조(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) <u>법 제6조의10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3] 과태료의 부과기준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위반 행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법 조문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</td> <td>법 제61조 제1항제1호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tr> <td>2.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</td> <td>법 제61조 제1항제2호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tr> <td>3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</td> <td>법 제61조 제1항제3호</td> <td>70만원</td> </tr> <tr> <td>4. 법 제40조·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</td> <td>법 제61조 제1항제4호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 행위	법 조문	금 액	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1호	100만원	2.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2호	100만원	3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3호	70만원	4. 법 제40조·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4호	100만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위반 행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법 조문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</td> <td>법 제61조 제1항제1호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tr> <td>2.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</td> <td>법 제61조 제1항제2호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tr> <td>3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</td> <td>법 제61조 제1항제3호</td> <td>70만원</td> </tr> <tr> <td>4. <u>법 제6조의2제2항·제6조의3제3항·제40조·제41조 및 제42조제5항</u>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</td> <td>법 제61조 제1항제4호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 행위	법 조문	금 액	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1호	100만원	2.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2호	100만원	3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3호	70만원	4. <u>법 제6조의2제2항·제6조의3제3항·제40조·제41조 및 제42조제5항</u>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4호	100만원
위반 행위	법 조문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1호	1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2호	1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3호	7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법 제40조·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4호	1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 행위	법 조문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1호	1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2호	1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3호	7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<u>법 제6조의2제2항·제6조의3제3항·제40조·제41조 및 제42조제5항</u>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4호	1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5.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5호	100만원	5.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5호	100만원
6.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6호	100만원	6.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6호	100만원
7.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7호	100만원	7.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61조 제1항제7호	100만원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324